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O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3호의 유족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에 포함(안 제19 조제2항제3호)
- O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19조제2항 제4호)
-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를 제19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제19조(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정당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정당
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란	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u>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3.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4.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
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 - 1771